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위험 증가, 1인 가구 확대, 고립·은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역할, 의무 및 해촉 기준 등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위촉 (안 제4조~제5조)
- 역할, 의무 및 해촉 (안 제6조~제8조)

-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지원 (안 제9조~제10조)
- 표창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 제정 배경 및 취지

-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세 모녀법이 마련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0년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및 시행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2025년 12월 기준 총 1,32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구성·위촉·역할·의무·교육 및 활동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위기가구’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협력을 촉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구성)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안 제5조(위촉)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공개모집, 동장 추천, 관련 기관·단체 추천으로 명시하고, 위촉기간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력 확보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역할)는 위기가구 발굴·신고, 주민 참여 유도·홍보, 물적·인적자원 연계, 신고체계 활용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여,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 안 제7조(의무)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위기가구 및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8조(해촉)는 품위 손상, 비밀누설, 장기간 미활동 등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실시 및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10조(활동지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발적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 안 제11조(표창)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에서 요구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 주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위촉·역할·의무 및 해촉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체계화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0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 의 자: 최봉희 · 정선희 · 이순우  
전승관 · 이성수 · 우경란  
의원(6인)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사회적 위험 증가, 1인 가구 확대, 고립·은둔 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나. 현재 영등포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 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역할, 의무 및 해촉 기준 등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 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위촉 (안 제4조~제5조)
- 라. 역할, 의무 및 해촉 (안 제6조~제8조)
- 마.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지원 (안 제9조~제10조)
- 바. 표창 (안 제11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 모집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복지상담센터·빨간우체통 등 신고체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5. 그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이 적극적이거나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